

- 본 사업지는 「주택법」 제64조(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)에 의거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.
- 다만 주택법시행령 제73조(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파기한 경우) 4항 7호 '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'에 의거 예외를 두어 부부의 경우 공동명의(증여)를 허용하고 있습니다.
- 부부공동명의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안내에 따른 서류 및 증여계약서를 준비하시어 견본주택으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업무진행 효율화를 위해 일정기간을 정하여 부부공동명의 절차를 진행하오니 해당기간 내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- 해당기간 이후의 부부공동명의 신청은 조합의 업무일정에 따라 신속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어 이번 접수기간 내에 부부공동명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.

## ① 증여계약서 작성 및 검인

- 은평구청 2층 지적민원실 방문 후 증여계약서 검인 작성 (연락처 : 02-351-6775)
- 구비서류
  - 은평 서해그랑블 분양계약서 (공급 계약서)
  - 증여계약서 (공급 계약서 토대로 작성, 인감도장 날인) : 첨부양식
  - 신분증 : 증여인(계약자) 및 수증인(배우자) 중 방문하는 사람의 신분증
- ※ 부부 중 1명이 반드시 방문 (부부 외 제3자 대리 불가)

## ② 분양계약서 권리의무 승계(계약서 명의 추가) 작성

- 기간 및 장소
  - 기간 : 2019.05.09.(목) ~ 2019.05.10.(금) / (2일간, 10:00 ~ 16:00 까지)
  - 장소 : 당사 견본주택 / (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33-4 원흥프라자 2층)
- 구비서류
  - 은평 서해그랑블 분양계약서 원본 (공급 계약서, 발코니확장 계약서, 추가 선택품목 계약서) 원본
  -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원본
  - 인감도장 (증여인, 수증인)
  - 본인발급 인감증명서 (증여인 : 부동산매도용, 수증인 : 일반용) 각 1통
  - 신분증 (증여인, 수증인)
  - 주민등록등본 (주민번호 전부 표시하여 발급)
  -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(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)
- ※ 부부 중 1명이 반드시 방문 (부부 외 제3자 대리 불가)
- ※ 모든 서류는 2019.05.01.(수) 포함 이후 발행분만 인정합니다.
- 권리의무 승계 후 증여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 및 납부 (신고납부 의무자 : 수증인)
  - ※ 배우자 10년 6억까지 공제 가능하나(증여세 없음) 신고는 해야 함

